
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(손명수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공항시설 사용자가 사용료를 체납하는 경우 그 연체금의 부과근거 및 기준을 신설함(안 제32조제5항 및 제6항 신설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경미한 자구 수정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(주서본 참조).

(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)